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72 발의연월일: 2025. 4. 21.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정희용

김태호 • 최은석 • 박성민

서명옥 · 조은희 · 엄태영

이달희 • 이성권 • 김선교

송언석 • 박형수 • 임종득

김형동 • 이상휘 • 구자근

강명구 · 김정재 · 조지연

김석기 · 임이자 의원

(23인)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한도를 없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9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② (생 략)	및 상한액)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③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	
다. <u><단서 신설></u>	<u>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u>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
	에는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한
	<u>다.</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